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8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김동아 · 이건태 · 박균택
임미애 · 정준호 · 문대림
염태영 · 양부남 · 최혁진
윤준병 · 김남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청년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

로 전환하여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로 하고,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청년정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의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청년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3. 제24조의5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총괄 및 조정·관리
4.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6.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중전의 제24조의4)의 제목 중 “청년지원센터”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청년정책”을 “지역 청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의”를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청년발전”을 “지역 청년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국무총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를 “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역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역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를 “지역센터”로, “지정 취소 절차, 운영”을 “지정 취소의 절차·운영”으로 한다.

제24조의6(중전의 제24조의5)제3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진흥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청년정책”을 “진흥원,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년정책”을 “진흥원,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28조제3호 중 “청년정책”을 “진흥원, 청년정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청년정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진

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청년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재산 및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진흥원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청년재단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청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4(청년정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의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청년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u> <u>2.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u> <u>3. 제24조의5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총괄 및 조정·관리</u> <u>4.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u> <u>5.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u>

· 관리

6.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
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
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청년정책과 관련
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생략)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생략)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1. 지역 청년정책-----
2. (현행과 같음)
3. 지역-----

4. (현행과 같음)
5. -----지역 청년발전-----

<삭 제>

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

③ -----지역센터-----

1. 2. (현행과 같음)

3. 제1항-----

④ -----제3항-----
지역센터-----

⑤ -----지역센터-----
-----지정 취소의 절차·운영-----

제24조의6(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무총리는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생략)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u>청년정책</u>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청년정책</u>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③ -----<u>진홍원</u>,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7(청년친화도시) (현행 제24조의6과 같음)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진홍원</u>, <u>청년정책</u>----- ----- --. ② ----- ----- ----- -----<u>진홍원</u>, <u>청년정책</u>----- -----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u>청년정책</u> 관련 전문기관 ·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진흥원, 청년정책</u> ----- -----
---	--